

항공안전법

[시행 2026. 9. 17.] [법률 제21822호, 2026. 6. 16., 일부개정]

【제정·개정이유】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,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 및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【제정·개정문】

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이재명 (인)

2026년 6월 16일

국무총리 김민석

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

○ 법률 제21822호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2항제2호"를 "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"로 한다.

1의2.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(무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)를 비행시킨 사람

제166조제3항제5호 중 "제161조제4항제2호"를 "제161조제2항제1호의2·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"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